

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·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

(제51조의2제1항 관련)

1.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

가. 최근 3년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가 80 점 이상이고, 같은 종류의 사업자 중 상위 100분의 1 이내일 것. 다만,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10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개사를 지정할 수 있다.

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(100점) = 저사고율(60점) + 안전경영 지표(40점)

1) 저사고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저사고율} = \frac{\text{업체별 해양사고율}}{\text{총 평가대상의 해양사고율}} + \frac{\text{업체별 사상자율}}{\text{총 평가대상의 사상자율}}$$

2) 안전경영 지표는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, 같은 종류의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항목을 적용한다.

- 가) 사업자의 고용안정성
- 나) 선원에 대한 투자 정도
- 다) 안전관리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정도
- 라)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정도
- 마)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

나. 최근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

- 1) 사업자가 소유·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(이하 이 표에서 "운영선박"이라 한다)에서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(이하 이 표에서 "해양사고"라 한다)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·실종자가 발생하거나, 운영선박이 3명 이상의 사망자·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
- 2)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여객이 사망·실종되거나 5명 이상의 여객이 중상(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입은 경우
- 3)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로 전손(全損)된 경우 또는 다른 선박의 전손(全損)을 일으킨 경우
- 4) 운영선박에서 「해사안전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
- 5)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
- 6) 사업자가 아시아·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(Tokyo MOU) 등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의 안전수준 평가에서 보통(medium)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

우

2.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지정 취소

- 1) 법 제5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제1호나목1)부터 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3) 효력 기간 중 효력정지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효력정지 3개월 이내

- 1) 운영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2명 이하의 사망자·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선박이 2명 이하의 사망자·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
- 2)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4명 이하의 여객이 중상을 입은 경우
- 3) 해양사고로 인하여 운영선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를 일으켜 다른 선박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
- 4) 운영선박이 제1호나목4)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
- 5) 삭제 <2021. 9. 24.>